

『구미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미시장

2. 제안이유

- 전국 공통 감면사항이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으로 이관되어 관련 조항을 폐지하고, 관계 법령 개정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코자 함.

3. 주요내용
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으로 이관 및 폐지고시 된 조문 삭제
 - 제4조(한센정착농원지원) → 지특법 제17조의 2
 - 제6조(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) → 일몰종료(2011. 12 .31)
 - 제8조(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) → 지특법 제58조의 2
 - 제9조(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) → 지특법 제85조의 2
 - 제10조(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) → 지특법 제60조
 - 제11조(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) → 지특법 제56조
 - 제14조(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) → 지특법 제58조
 - 제16조(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) → 고용보조금 폐지
지식경제부 고시 2012-1(2012.1.2)
- 국내 장애인(시각장애 4급)과 혼인한 외국인을 장애인 감면차량 공동명의 등록대상 범위에 포함(안 제2조)
- 종교단체가 의료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 경감(안 제3조)
-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면제 및 100분의 50 경감
(안 제6조 제1항~4항)

- 향토기업에 대한 재산세 100분의 50 경감(안제8조)
-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기존 조문 정비

4. 참고사항
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제4조, 「지방세법」, 「장애인복지법」, 「자동차관리법」, 「관세법」, 「민법」, 「농어업·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」 「식품산업진흥법」 「수산물품질관리법」, 「조세특례제한법」, 「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」, 「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, 「지방세법 시행령」, 「부가가치세법」
- 「경상북도 문화재 보호조례」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2012년 3월 2일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법령으로 이관 및 폐지 고시되어 실효성이 없는 조문 등을 폐지하고, 관련 법 개정 등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코자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임.

○ 주요내용은

-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으로 이관 및 일몰종료 된 감면조항 제4조(한센정착농원지원), 제6조(미분양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), 제8조(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), 제9조(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), 제10조(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감면), 제11조(신용보증재단에 대한 감면), 제14조(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) 및 지식경제부고시 2012-1(2012.1.2)호로 폐지된 고용보조금 관련 조항인 제6조 (고용창출기업에 대한 감면)를 삭제 하고

- 안 제 2조에 시각장애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감면차량 공동명의 등록대상에 외국인 배우자도 포함하고, 안제3조에 종교단체가 의료업을 위해 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경감하고, 안 제 6조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 면제 및 100분의 50을 경감, 안 제9조에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해 자동이체 납부 시 고지서 1장당 150원을,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납부 시 300원을 경감하는 내용임.

○ 검토결과

- 전국공통 조례감면사항이 「지방세특례제한법」으로 이관되어 법령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, 관계법령 개정으로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시민의 부담경감을 위해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